

국민연금연구원장(개방형) 공개모집



국민의 소득보장과 복지증진의 중추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국민연금연구원장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공모직위(임기) 및 인원

- 국민연금연구원장(임기 : 3년) 1명
- ※ 직무수행실적에 따라 연장 계약 가능

2. 주요 담당업무

- 재정추계 및 연금수리모형 개발에 관한 사항
- 연금재정운용 제도의 연구에 관한 사항
- 기금투자 정보 분석 및 투자결과 평가분석에 관한 사항
- 장기재정전망, 기금운용방향 설정을 위한 연구에 관한 사항
- 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 각종 연금 통계 자료의 분석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격요건

○ 일반요건

- 국민연금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윤리의식을 갖춘 사람
-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공단 경영혁신을 위한 개혁의지와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사람
-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가진 사람

○ 세부 경력요건

- 박사학위* 취득 후 연구경력**이 7년 이상인 자로서 국민연금에 관한 식견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 박사학위 인정 전공의 범위(어느 하나에 해당)

1. 사회보장 (사회보험, 사회정책, 사회복지)
2. 경 제 학 (거시경제, 계량경제, 공공경제학, 금융경제학)
3. 경 영 학 (재무관리, 계량경영학, 금융보험학)

※※ 연구경력 인정 범위(어느 하나에 해당)

◇ 아래 기관에서 사회보장, 경제·재정추계, 기금투자 분야 연구 또는 강의 수행 경력

1. 국내외 국·공립 연구기관(연구부서 포함) 및 민간연구소 연구경력
2. 국내외 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교수(연구/강의) 경력
3. 공무원(준공무원) 재직 중 연구(전문직 공무원) 경력

○ 「인사규정」 제1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별지1>

4. 제출서류

- 지원서, 경력기술서, 직무수행계획서, 박사학위 논문요약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각 1부(첨부파일 참조)
- 학력증명서(대학교 이상 모두 제출) 1부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논문·저서·수상 증명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5.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 접수기간 : 2021. 5 .13 .(목) ~ 5 . 28 .(금) 18:00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접 수 처 : (우)54870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80(만성동)
국민연금연구원장 선발시험위원회(6층, 인사혁신실)
- 접수방법 : 방문(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6. 심사방법

- 서류심사(지원자가 6명 이상인 경우 5배수 이상 선발)
 - 제출한 지원서를 중심으로 지원자의 전문성, 적합성, 경력 등을 심사
 - 직무수행 계획이 공단의 발전과 비전에 부합하는지 심사
- 면접심사(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면접 실시)
 - 경력의 공단업무 연계성과 직무 수행 능력 심사
 - 윤리의식 및 연금제도에 대한 이해도 심사

- 면접일시 및 장소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 지원자가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에 미달 시 재공고 가능함

7. 기타사항

- 입사지원서 기재내용의 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은 모두 지원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입사지원서 및 제출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 채용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또는 부정하게 합격한 사람(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정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본인)에게는 해당 시험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제한합니다.
- 임용되지 않은 지원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해 임용여부가 결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 기간이 지나면 제출서류는 개인정보보호에 의해 파기되므로 반환이 불가합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더라도, 지원자격 또는 임용에 결격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인사혁신실(☎063-713-521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사규정」에 따른 채용 결격 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6의 2. 공단 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6의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6의 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날로부터 5년, 해임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8. 「병역법」상의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사람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10. 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경우에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